
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88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3. 17.

발 의 자 : 성일종 · 김은혜 · 김태흠
박덕흠 · 이명수 · 이종배
조명희 · 최춘식 · 추경호
홍문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외국학교법인이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정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이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외국인투자기업에 특례를 지원하고, 기업도시 및 인근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의 임직원 자녀들이 입학·전학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, 정작 초·중등 외국교육기관이 부재하여 외국인 정주여건을 조성하지 못하고 지방이주기업 자녀들의 학교선택의 폭을 좁혀서 결과적으로 내·외국인 가족단위 유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외국교육기관 중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제외

하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을 촉진하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8조).

법률 제 호
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 전단 중 “외국교육기관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)을”을 “외국교육기관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) 외국학교법인이 개 발구역에서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<u>외국교육기 관</u> 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)을 설립· 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22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경 제자유구역”은 “개발구역”으로, “경제자유구역위원회”는 “위원 회”로 본다.	제38조(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외국교육</u> <u>기관을</u>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